

2025년 4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2026. 2.

행 정 국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목적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요

- 사업기간 : 2025. 7. ~ 2025. 12.
- 사업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 서울시민
- 총사업비 : 2,265,187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금 액	2,265,187	1,698,890	339,778	226,519
비 율	100%	75%	15%	10%

□ 간주처리 사유 및 내역

- 강서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약 19억원 부족한 상황으로, 신용·체크카드사의 대금을 연내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4차 교부한 국비에 대한 간주처리 필요

※ 총 부족금액 : 1,902,234천원(국비 1,426,676천원, 시비 285,335천원, 구비 190,223천원)

- 간주처리 내역 : 1,426,676천원 ('25.12.22. 교부 통지 / 12.26. 간주처리)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예산과목	기정예산	변경예산	부담기관	예산과목	기정예산	변경예산	주관부서
보조금 (국고보조금)	1,697,463,675	1,698,890,351	행정안전부	사회보장적 수혜금	2,040,262,550	2,041,689,226	행정국 자치행정과

※ 사업명 : (정책)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단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세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 붙임 1.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세부 내역 1부.
2. 강서구 카드 정산금 교부 요청 1부.
3.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근거 서류 1부.

○ 제4차 간주처리 세부 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1,697,463,675	1,426,676	1,698,890,351

-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1,697,463,675) 2,047,463,675	(×1,426,676) 1,426,676	(×1,698,890,351) 2,048,890,351
시·자치구 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1,691,462,550) 2,040,262,550	(×1,426,676) 1,426,676	(×1,692,889,226) 2,041,689,226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6,001,125) 7,201,125	-	(×6,001,125) 7,201,1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정산금 교부요청 (서울 강서구)

○ 예산현황(소비쿠폰)

(2025. 12. 19. 기준 / 단위: 원)

구분	총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39,146,200,000	104,359,650,000	20,871,930,000	13,914,620,000
1차 교부	90,464,300,000	67,848,225,000	13,569,645,000	9,046,430,000
2차 교부	43,327,200,000	32,495,400,000	6,499,080,000	4,332,720,000
3차 교부	5,354,700,000	4,016,025,000	803,205,000	535,470,000

○ 예산집행현황

(2025. 12. 19. 기준 / 단위: 원)

총 지출액	총 집행잔액	재원별 집행잔액		
		국비	시비	구비
119,262,473,200	19,883,726,800	14,912,795,100	2,982,559,020	1,988,372,680

○ 지출예정금액: 21,785,960,420원(원단위 절상)

(단위: 원)

총계	국비	시비	구비
21,785,960,420	16,339,470,315	3,267,894,063	2,178,596,042

○ 부족금액: 1,712,010,258원

(국비 1,426,675,215원 / 시비 285,335,043원)

(단위: 원)

총계	국비	시비	구비
1,902,233,620	1,426,675,215	285,335,043	190,223,362

○ 간주예산 편성 가능 여부

→ 12/23(화) 전까지 행안부 등 공문 수신 시 가능

○ 2025년 최종 간주 일정(강서구)

- 12/23(화)까지 예산부서 공문 발송
- 12/30(화) 최종 확정

강서구	자치행정과장: 최순형(☎2600-6151) 동행정팀장: 박성복(☎6025) 중괄: 최장원(☎6706)
강서구	자치행정과장: 최순형(☎2600-6151) 동행정팀장: 박성복(☎6025) 예산: 이샘이(☎6040)

○ 간주처리 근거 서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4차 교부 결정 통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서울특별시시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4차 교부 결정 통지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4차)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서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서기관	재정정책과	전결 2025. 12.
이덕선	홍성우	장	22. 김수경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7754	(2025. 12. 22.)	접수 자치행정과-18885	(2025. 12. 22.)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www.mois.go.kr	
전화 044-205-6076	/전송 044-205-8750	/ kwuli01@mail.go.kr	/ 비공개

- (붙임)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4차)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의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명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보조사업자 : 1개 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5. 7 ~ 12월

○ 사업규모 : 국비 121,605억원

○ 보조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서울 75%, 그 외 지자체 90%)

○ 사업내용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교부목적

○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사업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 지원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10 일반·지방 행정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1300 지방재정경제	1350 긴급재정지원	301 민생회복 소비쿠폰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교부총액	1차 교부액	2차 교부액	3차 교부액	금회(4차) 교부액 <소비쿠폰>
총계	12,120,122,601	8,060,439,126	3,540,507,840	519,175,635	1,426,676
서울	1,697,463,675	1,123,078,350	548,798,400	25,586,925	1,426,676
부산	852,291,342	581,063,472	231,399,270	39,828,600	0
대구	616,909,698	420,008,598	168,434,550	28,466,550	0
인천	716,619,240	458,837,910	217,836,270	39,945,060	0
광주	367,959,330	250,266,510	100,244,700	17,448,120	0
대전	371,375,730	251,985,690	102,763,080	16,626,960	0
울산	277,222,770	188,597,520	78,443,190	10,182,060	0
세종	97,310,142	65,323,692	27,921,690	4,064,760	0
경기	3,081,332,772	1,973,023,002	978,918,210	129,391,560	0
강원	403,614,396	274,362,606	107,894,430	21,357,360	0
충북	419,201,532	284,227,632	114,118,650	20,855,250	0
충남	563,508,000	382,506,480	153,411,390	27,590,130	0
전북	470,777,508	321,890,418	123,834,960	25,052,130	0
전남	483,026,994	330,097,824	127,911,510	25,017,660	0
경북	678,213,414	462,309,714	180,421,470	35,482,230	0
경남	851,006,736	576,047,646	230,463,990	44,495,100	0
제주	172,289,322	116,812,062	47,692,080	7,785,180	0

※ 소비쿠폰 비용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부대비용으로 사용 불가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5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①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교부 신청서 상 자부담액을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6.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7.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조사업자(자치단체)의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추후 당해 연도에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조치 함

② 보조사업 수행 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가. 보조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조사업자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가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조사업자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가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③ 보조사업 정산 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다. 집행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기타 보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④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